

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3일

3. 제정이유
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(안 제3조)
-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자문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위촉직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함(안 제7조)
- 상정된 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세부 처리방안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사유 및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함(안 제15조,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첫째, 안 제3조에는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
 - 둘째, 안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의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
 - 셋째, 안 제9조에서는 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세부 처리방안을 규정하였음.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던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. 끝.